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054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하여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 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 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
- 2. 제1항제4호의 방송사업자

제4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③ (생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
	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
	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
	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
	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
	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
	<u>다)</u>
	2. 제1항제4호의 방송사업자
<u>④·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	<u>⑦</u>
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	
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	
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u>제</u>	<u>제</u>
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	<u> 6항</u>
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u>⑦</u> 제	1항부	터 <u>제6</u>	<u>항</u> 까지。	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	송등의
실시	및 운영	영 등이	게 필요형	한 구체
적인	사항은	- 대통	령령으로	믿 정한
다.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 송사)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 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 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u>(8)</u> <u>제/항</u>			- —
				- —
				- —
				- —
	.			
제	세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	항
	송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주된	만방:	송사	느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	<u>송</u>
	법」 제69조제8항에	따리	- 장(개
	인의 시청을 돕기 위	하여	한 :	국
	수어를 이용하여야 현	<u>한다.</u>		
	<u>⑤</u> 제2항부터 제4항끼	-지-		
				- —
				- —
				- —